

/인/도/네/시/아

INDONESIA

I. 수출입동향

II. 관세제도

III. 수입검사제도

IV. 식품위생제도

V. 수입규제제도

VI. 기타 사항

● ● ● 목 차 ● ● ●

I. 수출입동향	435
1. 수출입개요	435
2. 양국간교역현황	437
3. 한국산수출현황분석	439
II. 관세제도	443
1. HS코드별종합관세율	443
2. 수입통관절차	446
3. 통관구비서류	448
4. 통관시주의사항	449
5. 주요세관현황	451
6. 원산지규정	452
7. 관세법위반시제재조치	453
8. 관세평가제도	453
9. 기타관세관련제도	454
III. 수입검사제도	458
1. 수입허가사항	458
2. 식품수입검역, 검사절차 제도	460
3. 검역 · 검사관련기관	462
4. 한국산농산물에대한검역규정및 검역현황	464

● ● ● Contents ● ● ●

IV. 식품위생제도.....	465.....
1. 식품표시제도.....	465.....
2. 수입식품의성분.....	467.....
3. 식품첨가물.....	467.....
4. 식품검사제도.....	469.....
5. 잔류농약허용기준.....	470.....
6. 유전자변형식품현황.....	472.....
7. 기타식품위생관련제도.....	472.....
V. 수입규제제도.....	477.....
1. 한국산상품수입규제현황.....	477.....
2. 수입할당제도.....	480.....
3. 세이프가드제도.....	481.....
4. 수입제한사항.....	481.....
5. 수입금지품목및 국가	481.....
6. 반덤핑및 상계관세정책	482.....
7. 품질인증제도.....	483.....
8. 기타비관세장벽및 조치	484.....
9. 한국식품수입규제및 위반사례등	486.....
VI. 기타사항	488.....
1. 농수산물(식품) 관촬요정부기관현황.....	488.....
2. 인도네시아수출시유의사항.....	493.....

I. 수출입동향

1. 수출입 개요

-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2005년도 인도네시아의 총수출이 855억6500만 달러로 2004년 대비 19.53%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중 석유가스 수출액은 192억4900만달러로 전년비 23.03%가 증가했으며, 비석유가스 부문의 수출은 663억1600만달러로 전년대비 18.5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2005년 수입은 총 575억4700만달러로 전년대비 23.69%가 증가했는데, 이중 석유가스 수입은 173억9100만 달러로 전년비 48.24%가 증가했으며, 비 석유가스 부문 수입은 347억9200만 달러로 전년비 15.42%가 증가함. 이에 따라 2005년도 무역흑자는 280억 1800만 달러를 기록, 2004년의 250억6000만 달러보다 약 30억 달러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비 석유가스 부문의 품목별 수출 현황을 보면, 공산품 수출이 551억 4000만달러로 13.28%가 증가했으며, 광물 수출은 석탄과 동광의 수출확대에 힘입어 80억3900만 달러로 전년 비 무려 68.68%가 증가했다. 또한 농산물 수출도 팜 오일의 수출확대에 따라 31억3700만 달러를 기록, 전년대비 25.70%가 증가함.
- 용도별 수입현황을 보면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 445억8300만 달러로 전년비 23.15%가 증가했으며, 자본재 수입은 82억69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6.56%, 소비재 수입은 46억9500만 달러로 전년비 23.98%가 각각 증가함.

○ 석유가스를 제외한 품목들의 국별 수출현황을 보면 대일본 수출이 96억19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미국 94억5600만 달러, 싱가포르 70억6700만 달러, 중국 38억9500만 달러, 말레이시아 33억8700만 달러, 한국 26억2600만 달러의 순이었음.

석유가스를 제외한 품목의 수입에 있어서도 일본이 68억7000만 달러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중국 45억6000만 달러, 미국 37억9700만 달러, 태국 30억5100만 달러, 싱가포르 29억1500만 달러의 순이었음.

2005년인도네시아의 수출 현황

(단위 : U\$ 백만, %)

구 분	2004(금액)	2005		
		금 액	증감률	비 중
총 계	71,584.6	85,565.7	19.53	100.0
석유 및 가스	15,643.5	19,249.1	23.03	22.50
- 원 유	6,241.4	8,145.8	30.51	9.52
- 석유제품	1,654.4	1,920.7	16.10	2.24
- 천연가스	7,749.6	9,182.6	18.49	10.73
비석유가스	55,939.3	66,316.6	18.55	77.50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2005년 인도네시아의 수입 현황

(단위 : U\$ 백만, %)

구 분	2004(금액)	2005		
		금 액	증감률	비 중
총 계	46,524.5	57,547.3	23.69	100.0
석유 및 가스	11,732.0	17,391.1	48.24	30.22
- 원 유	5,831.4	6,797.0	16.56	11.81
- 석유제품	5,892.1	10,579.2	79.55	18.38
- 천연가스	8.5	14.9	75.29	0.03
비석유가스	34,792.5	40,156.2	15.42	69.78

자료원 : 인도네시아 통계청

2. 양국간 교역현황

-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9위 수출대상국 및 9위 수입대상국이며, 2005년에는 대 인니 수출실적이 50억 46백만 불로 전년 동기비 37.2%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으며, 수입은 81억 84백만 불로 전년 동기비 28.5%의 증가율을 보여 교역액이 사상 최고치인 132억 3천만 불을 기록하였음.
- 대인니 수출의 높은 신장율은 석유제품(경유) 수출 증가에 크게 기인하는데, 석유제품 수출은 총 16억 13백만 불로 전년동기비 무려 961%가 증가하였다. 석유제품의 수입은 2005년에 갑자기 증가한 것은 아니며, 종전 싱가포르를 통해 인니에 수출하던 것이 2005년부터는 직수출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 수입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대인니 주수입품목인 원유와 천연가스의 수입이 각각 34.1% 및 41.6% 증가하였고 석탄 수입이 30.2%, 동광 수입이 133.8% 증가하였다. 대인니 수입의 80% 이상은 자원이 차지하고 있을 만큼 인니는 한국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원자재 수입선임.
- 2006년도 우리나라의 대 인니 수출은 유류 수출이 금년과 유사하다고 가정할 경우 2005년 대비 약 6% 증가한 53억\$, 수입은 9% 증가한 85억\$로 32억\$ 정도의 무역적자가 전망됨.

2005년도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현황

(단위 : US\$ 백만, %)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교역	7,754	7,868	8,590	10,045	13,230
(증감률)	(△11.8)	(1.5)	(9.2)	(15.8)	(31.7)
수 출	3,280	3,145	3,378	3,677	5,046
(증감률)	(△6.4)	(△4.1)	(7.4)	(8.9)	(37.2)
수 입	4,474	4,723	5,212	6,368	8,184
(증감률)	(△15.4)	(5.6)	(10.4)	(22.2)	(28.5)
무역수지	△1,194	△1,578	△1,834	△2,691	△3,138

자료원 : KOTIS

○ 우리나라의 대 인도네시아 교역주종 품목

대 인도네시아 수출 20대 품목

(단위 : US\$천, %)

순 위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석유제품	152,015	918.6	1,613,173	961.2
2	철강관	294,063	51.2	311,672	6.0
3	합성수지	296,181	35.6	297,083	0.3
4	음향기기	173,721	-7.5	192,199	10.6
5	편직물	112,033	10.5	170,608	52.3
6	기타직물	133,185	-9.3	122,288	-8.2
7	전자관	177,170	33.1	102,557	-42.1
8	인조장섬유직물	109,449	-7.1	93,750	-14.3
9	컴퓨터	58,158	-51.7	93,229	60.3
10	자동차	87,832	36.0	85,939	-2.2
11	철강관 및 철강선	35,403	40.4	78,698	122.3
12	면직물	67,027	31.1	76,500	14.1
13	정밀화학원료	49,837	11.6	69,914	40.3
14	섬유 및 화학기계	56,681	8.4	63,420	11.9
15	합성고무	46,842	39.9	60,337	28.8
16	플라스틱제품	64,650	11.1	60,199	-6.9
17	영상기기	91,424	1.0	60,147	-34.2
18	기타 석유화학제품	47,550	66.1	57,030	19.9
19	무선통신기기	129,217	19.5	56,832	-56.0
20	가죽	71,210	-2.4	54,465	-23.5
총 계		3,677,740	8.9	5,045,582	37.2

대 인도네시아 수입 20대 품목

(단위 : US\$천, %)

순 위	품목명	2004		2005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천연가스	1,823,211	28.2	2,582,396	41.6
2	원유	1,457,444	41.8	1,953,873	34.1
3	석탄	548,218	127.6	713,778	30.2
4	등광	216,204	-3.7	505,512	133.8
5	석유제품	378,350	-5.2	330,910	-12.5
6	제지원료	271,102	17.2	320,429	18.2
7	목재류	237,321	-19.2	244,927	3.2
8	기타 석유화학제품	119,296	120.1	120,482	1.0
9	인조섬유방적사	112,291	13.2	120,280	7.1
10	정밀화학원료	100,861	-2.7	113,536	12.6
11	임산부산물	103,113	39.2	112,287	8.9
12	종이제품	94,950	-23.9	97,409	2.6
13	식물성물질	84,422	10.8	73,061	-13.5
14	유선통신기기	21,445	23.4	53,826	151.0
15	LPG	47,223	-	52,740	11.7
16	영상기기	46,997	-15.1	48,559	3.3
17	컴퓨터	40,959	-0.9	42,589	4.0
18	정지기기	26,542	444.5	42,035	58.4
19	주석제품	52,201	69.1	35,153	-32.7
20	합금철선철 및 고철	27,583	3.3	34,948	26.7
총 계		6,368,132	22.2	8,184,433	28.5

자료원 : KOTIS

3. 한국산 수출 현황 분석

○ 인도네시아가 생산하는 주요 농작물은 쌀, 팜유, 코코넛, 옥수수, 카사바, 닭고기, 천연고무, 계란, 쇠고기 돼지고기 등임. 과일류와 어류는 100% 이상의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곡물, 유지작물, 채소, 육류, 우유는 국내 생산만으로 국내소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인도네시아 농산물 교역의 특징은 가공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원료 농산

물 위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점, 수출 농산물이 천연고무, 팜유, 열대과일 등 열대 농산물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한 농산물 가운데 품목별로는 과실류 수출이 많았으나 수출규모는 작은 편임. 과실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이 130만 달러 정도 수출되었음. 그중에서 배가 75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 하였으며, 그밖에 1백만 달러 이상이 수출된 품목은 커피, 면류, 식물성액즙, 사료, 전분, 과자류 등임. 따라서 배를 제외하고는 신선 과일과 채소, 축산물 등의 수출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하는 농산물 가운데 곡물, 신선채소 및 과일, 화훼류 등은 거의 없음. 농산물(축산물과 임산물 제외) 수입액 1억달러 가운데 박류 6,700만 달러, 식물성 유지 2,005만 달러, 커피 937만 달러, 코코아 181만 달러, 당류 877만 달러, 과자 421만 달러 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임산물은 합판(1억 3,700만 달러), 제재목(4,900만 달러), 섬유판(800만 달러) 등이 주로 수입됨.
- 앞으로 한국, 아세안간의 FTA 체결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면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관세분야에서는 17.5%의 세금이 줄게 되어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 예를 들어 한국산 배의 경우 각 유통업체의 구매담당자들이 원하는 수입과일의 적정 판매가격인 25,000Rp가 가능해짐.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상대인 중국이 먼저 FTA를 발효시킴으로서 가뜩이나 저렴한 가격에 추가 가격하락 요인이 생겨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더 갖추겠지만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에게 품질로 차별성을 부각한다면 농산물의 수출증대가 가능함.

인도네시아 수출현황

(단위 :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곡류	2,337	1,986	480	190	235	136
- 밀	2,337	1,978	463	141	184	39
- 기타곡류	-	8	17	49	51	97
두류	2	-	1	-	-	-
전분	942	1,418	1,799	1,849	1,541	1,042
과실류	1,855	1,450	1,526	1,812	1,664	1,338
- 사과	346	241	22	112	18	3
- 배	1,364	956	1,205	1,390	780	745
- 복숭아	4	4	12	3	9	4
- 단일과실조제품	23	84	127	189	264	353
- 포도	66	33	91	24	55	73
- 감귤	52	34	28	83	127	74
- 기타 과실류	-	98	41	11	172	70
채소류	922	3,255	1,697	763	1,122	903
- 김치	148	96	81	106	32	34
- 토마토	-	-	30	-	-	-
- 양파	-	67	104	-	-	-
- 마늘	-	2,632	715	-	-	-
- 고추	297	36	10	17	21	308
- 채소종자	468	417	750	609	963	489
- 기타 채소류	9	7	7	31	106	72
유지가공품	144	78	250	383	478	276
사료	236	1,169	1,656	2,035	2,460	2,323
면류	1,050	1,358	2,460	3,353	2,825	3,022
과자류	632	401	629	546	1,014	780
당류	9,265	5,808	5,188	6,365	5,943	9,321
주류	242	352	257	395	463	436
인삼류	234	186	138	235	661	116
연초류	167	1	232	956	1,725	2,926
커피류	2,736	4,062	6,697	8,300	11,968	14,454
식물성물질	525	309	131	85	79	45
식물성액즙	708	1,321	1,624	2,446	1,614	728
기타농산물	355	495	661	841	282	538
농산물전체	22,352	23,649	25,426	30,559	34,895	39,568
축산부산물	360	190	165	406	624	666
단백질류	254	223	217	140	96	52
기타축산물	11	102	32	60	-	-
축산물전체	625	515	414	606	792	1,158
제재목	114	255	247	270	458	665
합판	-	590	-	24	128	428
단판	398	459	239	109	150	208
섬유판	606	464	858	573	275	219
파티클보드	11	5	28	34	117	53
기타 목재	174	100	296	289	340	737
기타 임산물	231	65	63	45	0	2,394
임산물전체	1,534	1,938	1,731	1,344	1,507	4,744
총 계	24,511	26,102	27,571	32,509	41,536	51,346

인도네시아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곡류						
- 옥수수						
서류	5,364	2,473	-	-	2,510	3,215
- 타피오카	5,364	2,473	-	-	2,510	3,215
두류	-	-	-	4	-	-
전분	46	16	3	6	-	-
과실류	213	880	483	906	1,087	1,638
- 파인애플	114	297	79	89	-	105
- 코코넛	16	2	19	27	30	214
- 과실혼합물	10	365	115	51	20	47
- 기타 과실류	73	216	270	739	1,037	1,272
채소류	3,912	1,461	1,256	1,258	714	885
- 오이	-	9	27	8	10	-
- 후추	3,658	1,242	1,036	956	564	543
- 채소종자	197	206	118	219	120	238
- 기타 채소류	57	4	75	75	7	60
화훼류	111	37	57	53	3	172
버섯류	209	108	157	131	158	130
식물성유지	22,281	4,086	19,891	22,946	8,610	2,005
박류	30,696	30,465	42,262	51,528	73,911	67,415
사료	1,566	1,099	1,177	1,268	1,087	1,317
지방성물질	1,011	1,479	1,455	1,438	826	171
커피류	12,046	3,516	8,979	5,137	5,550	9,378
코코아류	2,989	2,139	1,969	2,950	2,285	1,817
주류	581	353	376	424	443	479
당류	3,886	4,747	3,718	2,495	4,770	8,773
과자류	5,178	4,779	6,121	6,293	5,884	4,214
면류	646	2,102	2,758	2,261	3,340	2,892
기타 농산물	5,161	3,127	4,613	4,347	1,882	2,827
농산물 전체	95,822	62,887	95,271	103,406	118,786	114,504
축산부산물	79	117	204	161	253	357
골류	48	37	64	61	65	336
가금류	903	747	285	-	-	-
기타 축산물	132	212	426	542	30	179
축산물 전체	1,162	1,113	979	764	608	937
원목	856	8,385	733	196	16	190
제재목	56,026	66,249	76,393	61,072	51,142	49,875
합판	146,722	134,171	154,603	170,009	136,877	114,504
단판	917	681	490	273	405	806
섬유판	20,166	22,180	20,819	15,793	8,061	8,453
파티클보드	9,255	6,553	6,074	5,470	3,646	2,015
기타 목재	32,146	34,282	32,217	22,871	20,198	24,701
목탄	15,256	15,350	16,672	14,790	14,628	18,422
기타 임산물	4,863	4,341	4,514	4,736	4,536	3,476
임산물전체	286,294	292,607	312,899	295,747	238,331	246,790
총 계	383,278	356,607	409,149	399,917	384,036	396,116

II. 관세제도

1. HS코드별 종합관세율

- 상품분류 목적으로 1989년 1월부터 HS에 근거한 품목분류제도를 시행하였음. 아세안 가입국 전체가 그러하듯이 인도네시아 역시 일반관세와 아세안국가에 적용되는 특혜관세(CEPT :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체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1993년 5월 28일 HS협약에 가입하였음. 수입신고 전에 수입될 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알고자 하는 자는 관세국장에게 PTP (the Pre-Entry Classification)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품목분류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관세율의 경우 농산품의 경우 상당히 낮은 편이며 소비재의 경우는 높은 편임. 관세는 0% ~ 170%까지 부과됨.
- 수입관세는 고정세율, 수입과징금, 부가가치세, 사치품세로 구분되며 API(수입허가)소유자는 관세의 2.5% 비소유자는 7.5%의 법인소득세가 부과됨. 예를 들면 배의 경우 5%의 관세에 10%의 부가가치세, 2.5%의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총 17.5%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함.

부류별 관세율표

분 류	세 율 범 위	물 품 예
자동차	25 ~ 80(완성차)	승용차, 상용차
자동차 부품	15	
전기제품	5 ~ 15	
가죽류	10 ~ 15	
에틸알코올/알코올음료	30 ~ 170	에틸알코올, 맥주, 포도주
농산물	0 ~ 5	동물, 식물성 제품
기타	0 ~ 5	화학품, 약품류, 고무제품 등

인도네시아 HS 체계

KODE HS	NAMA KOMODITI	BEA MASUKIMP.D UTY(%)	PPNVAT (%)	PPN BMSALES TAX ONLUXURY GOODS(%)	PTNIMPO RTLICENSE
0201.10.000	<Indonesia> Daging binatang sejenis lembu, segar atau di-ngin. -Karkas dan setengah karkas <Inggris> Meat of bovine animals, fresh or chilled. -Carcasses and half-carcasses 고기류	5	0	0	
0808.10.000	<Indonesia> Apel, pir dan kwini, segar. -Apel <Inggris> Apples, pears and quinces, fresh. -Apples 과일류	5	0	0	
0706.10.000	<Indonesia> Wortel, turnip, salad beetroot, salsify, celeriac, radishes dan akar semacam yang dapat dimakan, segar atau dingin -Wortel dan turnip <Inggris> Carrots, turnips, salad beetroot, salsify celeriac, radishes and similar edible roots, fresh or chilled. -Carrots and turnips 야채류	5	0	0	
0302.69.900	<Indonesia> Ikan, segar atau dingin, tidak termasuk potongan ikan tanpa tulang dan daging ikan lainnya dari pos No.03.04. -Ikan lainnya, tidak termasuk hati dan telur: --Lain-lain : ---Lain-lain <Inggris> Fish, fresh or chilled, excluding fish fillets and other fish meat of heading No.03.04. -Other fish, excluding livers and roes : --Other : ---Other 생선류	5	0	0	

○ 고급품 판매세(특별 소비세)

고급품 판매세(Sales Tax on Luxury Good)는 재무부장관이 규정하는 수입 및 국내생산 고급품에 대해 10, 20, 30, 40, 50, 60, 75%의 차등세율을 적용함.

세금은 제품 수입업자 및 제조업자에만 과세하고, 소비자에게는 과세하지 않음.

○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 10% 대상품 :

- 가) 우유,치즈,요구르트,버터
- 나) 포장,패키지된 과일 및 야채주스
- 다) 포장,패키지된 논알코올 음료
- 라) 스킨케어용품,매니큐어,패디큐어,특정의 헤어케어용품
- 마) 가정용품,냉장고,히터기,TV수신기
- 바) 스포츠기구,용품,어린이 장난감류
- 사) 가솔린,디젤,세미디젤엔진을 탑재한 좌석수 10이상의차량

■ 20% 대상품 :

- 가) 10%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가정용품,냉장고,히터
- 나) 냉방장치,다리미,세탁기,면도기,악기
- 다) 모피,향수
- 라) 사진 및 촬영용품,화학부품,녹음 및녹화용품,재생기,레코드 플레이어,송신장치

■ 30% 대상품 :

- 가) 선박(정부,공공용 제외)
- 나) 10%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스포츠기구,용품
- 다) 골프용품, TV세트

■ 40% 대상품 :

- 가) 일정한 알코올음료

나) 수입피혁/합성피혁제품. 털, 양모피의 카펫

다) 귀금속,보석,진주제품,도기제품,석제품

라) 가정 오피스용의 가구,비품. 게임용품

마) 탄환과 기타무기류,무동력 기구

■ 50% 대상품:

가) 모피,동물,털 수제의 카펫

나) 40%에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항공기

다) 10%,30%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스포츠기구,용품

라) 무기류,총

■ 60% 대상품:

가) 배기량 250cc 이상 500cc 이하의 이륜차

■ 75% 대상품:

가) 40%에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알코올음료

나) 40%에 분류에 포함되지 아니한 귀금속,보석,진주

다) 고급요트

라) 가정 오피스용의 가구,비품. 게임용품

마) 배기량 3000cc 초과 가솔린 차

2. 수입통관절차

○ 관세법(1995년판) 제10조에 근거하여, 인도네시아 영토로 반입되는 모든 물품은 수입품 으로 간주되며 관세가 부과됨. 인도네시아 영토라 함은 육지(領土), 해양(領海) 그리고 領空을 포함하며, 인도네시아 법령이 완전히 적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과 대륙붕도 포함됨.

○ 세관검사는 수입품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서류심사와 현품검사를 포함한다. 신속한 물류 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품검사는 선별적으로 적

용되는데 1) 고관세율 품목 2)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품목 3) “Blacklist”된 수입화주의 수입물품 등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음을 의미함.

- 현품검사는 정보가 있는 경우 또는 컴퓨터에 의하여 무작위 선별된 경우 등에 실시되며, (현품검사를 위한) 선별결과는 수입물품을 청색지역 (Green Channel)과 적색지역(Red Channel) 장치하도록 결정함. 청색지역에 장치되는 화물은(일반적으로) 세관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적색지역에 장치된 화물은 반드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세관절차수행을 위한 수입신고접수(PIB : Lodgment of Import Declaration를 인도네시아어로 수입신고 접수란 뜻을 略語로 표현한 것임)는 서류로 제출하거나, 디스켓 등 전자매체를 사용하거나 또는 컴퓨터로 직접 접속하여 제출(EDI)할 수 있음.
- 다음 3가지 방식에 따라 112개 지역세관에 제출하는 형태가 각각 다름.

PIB제출방식에 따른 형태구분

합 계	112개	인도네시아 지역세관의 총 개수
TYPE A	23	1) PIB를 반드시 EDI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 4개 지역세관 - 탄중프리옥(Tanjung Priok) I, II, III세관, Soekarno-Hatta세관 2) PIB를 전자매체(Diskettes)로 제출해야 하는 19개 지역세관 - 불완전한 EDI체제를 시행하는 세관으로 판단됨
TYPE A	20	PIB제출을 디스켓으로 할 수 있는 20개 지역세관
TYPE A	69	기타 69개 세관은 PIB를 수작업으로 처리

3. 통관구비서류

- PENING B/L :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OPENING BANK의 배서가 되어야 하며, 포워드 또는 선사로부터 D/O(DELIVERY ORDER)를 받는데 사용
- PIB(PEMBERITAHUAN IMPOR BARANG-수입화물신고서) 수입자가 COMMERCIAL INVOICE를 기초로 작성하며, 수입화물의 명세 및 관련 세금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세금은 은행에 납부후 은행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PIB는 가장 중요한 수입통관서류중에 하나로 작성시 물품가, 운임, 화물중량, CONTAINER 등 오류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 ORIGINAL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ORIGINAL INSURANCE POLICY
- 세금납부영수증(SSP, SSBC-수입관세, 부과세, 수입소득세에 대한 영수증)
- ORIGINAL SKB(SURAT KETERANGAN BEBAS PEMUNGUTAN Pph 22) : 일반적으로 수입소득세는 수출용 원부자재 또는 투자의 경우 납부후 환급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환급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매수입건 마다 세무서의 확인을 받아 면세를 받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임.
- TANDA TERIMA BAPEKSTA(BAPEKSTA의 FACILITY를 사용하여 관세혜택을 받을 경우 -수출용 원부자재의 경우)

- SKEP FACILITY BAPEKSTA COPY(BAPEKSTA로부터 FACILITY를 받은 확인서)
- D/O(DELIVERY ORDER)
- (참고) : 인도네시아정부로부터 관세혜택을 받은 종류에 따라 수입통관 서류의 일부가 추가될 수 있음.
- 예) BKPM의 FACILITY를 받은 경우는 MASTER LIST와 SURAT KEPUTUSAN MENTERI KEUANGAN(BKPM 투자승인서)이 필요하며, BAPEKSTA FACILITY 이용시 TANDA TERIMA BAPEKSTA와 SKEP FASILITAS BAPEKSTA 필요.

4. 통관시 주의사항

- 인도네시아 통관규정은 수입 후 검사제도(post-entry audit system) 및 수입자, 은행, 세관을 연결하는 전자자료교환(EDI) 시스템 도입 이후 종전의 절차와 비교 많이 개선되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 검사관의 자의적인 규정해석 등 행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 수입된 물품은 세관영역에 도착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반입된 것으로 보지 않음. 선박이나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운송대리점은 세관에 도착예정보고서(A Notice of Estimated Time of Arrival)를 제출하여야 함. (선박이나 항공기가)도착한 때에는 대리점 대표는 적재 및 공급된 물품을 총망라한 적하 목록(Manifest)을 포함하는 G/D(General Declaration)를 도착 후 24시간 내에 세관장(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수입물품은 하역작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반출(Release)이 허용될 수

있음.

만약 일시 장치장(Temporary Storage)에 장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인이 없는 화물로 간주됨. 이 기간에 추가하여 60일 내에 반출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경매로 처분할 권한을 갖음. 경매절차는 수입관세, 제세 그리고 부과된 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진행됨. 공매 후 통지서에 표기된 90일의 기한 내 원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불 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 국고에 귀속됨. 만약 원소유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고로 귀속됨.

- 수입신고는 수입자 또는 관세사의 명의로 할 수 있음. 수입물품을 사용하기 위해 통관 허용을 받고자 하는 신고자는 다음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수입신고를 시행하고 제 세금을 은행 또는 세관에 납부

- 수입신고 제출, 증권 기타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

- 최대 4시간 이내에 수입자는 제출한 PIB가 접수되었는지 거부되었는지 여부와 어느 반출통로(Channel of Release)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세관장(공무원)으로부터 통보 받게 됨. 세관장은(접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부통지서에 거부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현품검사는 인도네시아 최종 도착지에서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별적 방법에 의하여 선택된 경우(적색 또는 청색통로 결정과 상관없이)에만 실시됨.

- 현품검사를 적용 받게 되는 물품의 기준은 다음의 경우로 요약할 수 있음.

- (우범)정보가 있는 경우

- 컴퓨터에 의하여 무작위로 선정된 경우

■ 일시 수입(허용)된 물품

■ 재 수입된 물품

현품검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탄중프리옥(Tanjung riok), 자카르타(Jakarta), 탄중프락(Tanjung Perak), 수라바야(Surabaya)세관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용 Hi-Co Scan X-ray를 사용함. 세관직원은 X-ray 투시기를 통하여 현품검사 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수입물품은 세관절차가 완료되고 수입 승인을 받은 이후에만 반출할 수 있음. 품목 분류상 오분류가 있었거나 수입신고서상에 세액계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수입 물품은 제세금이 부족한 상태로 반출될 수 있으나, 이 경우 부족세액은 부족세액통지서 가 발행된 이후 30일(Thirty)이내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함.

5. 주요세관현황

○ 인도네시아 관세청 조직

관세청장 산하에 아래와 같은 8개의 국이 있으며, 13개의 본부세관과 112개의 지방세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 1) 예산기획국(DIRECTORATE OF REVENUE PLANNING)
- 2) 관세기법담당국(DIRECTORATE CUSTOMS TECHNIQUE)
- 3) 통관국(DIRECTORATE CUSTOMS FACILITATION)
- 4) 소비세담당국(DIRECTORATE OF EXCISE)
- 5) 조사방지국(DIRECTORATE OF PREVENTION OF INVESTIGATION)
- 6) 심사평가국(DIRECTORATE OF VERIFICATION AND AUDIT)
- 7) 국제업무국(DIRECTORATE OF INTERNATIONAL AFFAIR)
- 8) 관세정보국(DIRECTORATE OF CUSTOMS AND EXCISE INFORMATION)

인도네시아는 14,500여명의 세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홍콩, 일본, 벨기에 등 4개 국가에(관세) 대표부를 설치하고 있다.

Headquarters

Kantor Pusat DJBC- Jl. Jenderal Ahmad Yani Jakarta 13230

PO.BOX 108 Jakarta 10002

Telp.4890308(Hunting); Telex.DJBC

■ 지역세관

Custom Attache

Custom Regional office I MEDAN

Custom Regional office II TJ. BALAI KARIMUN

Custom Regional office III PALEMBANG

Custom Regional office IV JAKARTA

Custom Regional office V BANDUNG

Custom Regional office VI SEMARANG

Custom Regional office VII SURABAYA

Custom Regional office VIII DENPASAR

Custom Regional office IX PONTIANAK

Custom Regional office X BALIKPAPAN

Custom Regional office XI MAKASAR

Custom Regional office XII AMBON

Custom regional office XIII ACEH

6. 원산지규정

- 원산지 증명서는 검역의 목적 또는 수출용 원부자재를 수입한 후 관세 환급 신청 시 요구되는 정도임. 의약품과 마취제 등 특별한 품목을 수입

할 때는 원산지 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함. 인니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무역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음. FTA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함.

- 특히 2005년 섬유류에 대한 쿼터 철폐 이후 미국과 EU가 중국산 섬유에 대해서만 잠정적으로 2-3년간 쿼터규제를 취하기로 하자 중국산이 쿼터회피를 위해 인니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섬유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 또한 2006년 들어 EU가 중국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신발류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엄격히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CEPT(공동유효 특혜관세) 협정에 따라 아세안 회원국가에서 60% 이상의 부가가치가 부여된 상품에 대하여 특정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상들은 감세 및 절세를 목적으로 싱가포르나 바탐섬 등 자유무역지대(AFTA)로 우회 수입을 하여 인도네시아로 재수입하는 것을 관례화하고 있음. 직수입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를 경유하는 선박에 일단 선적을 하고 싱가포르에서 환적한 후 제반 선적서류를 교환하여 CEPT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음.

7.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은 수입 통관후 2년간, 수입품의 관세품목 분류와 평가액을 재결정(조정,수정,재평가) 할 권한이 있음.따라서 세관이 수입관세의 과세여부를 결정하면 최소 5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됨.

8. 관세평가제도

- HS 도입 이전에는 종량세품목이 521개 품목으로 총품목의 10% 수준

이었으나, ‘89-90년 기간중 모든 종량제를 종가세 및 수입과징금으로 대체시킨바 있음.

- 관세부과는 CIF 가격기준

관세금액 = 수입품가격 X 관세율 X 관세환율

관세환율은 재무성이 외국 통화를 루피아로 환산한 금액

○ 관세부과기준 가액

■ FOB 가격기준으로 U\$5,000 이상인 경우, 수출시 SGS가 평가한 수출국의 정상시장가격과 송장금액 중 높은 가격

■ U\$5,000이하인 경우, 송장금액, 단 송장금액이 의심스러운 경우 유사 물품 가격과 비교하여 결정함.

9. 기타 관세 관련제도

○ 관세 면제와 감면

수입관세는 통과화물(Transit Cargo) 또는 환적 화물(Transshipment)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으며,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관세영역 안으로 반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반입 되는 시점에 관세를 부과함. 국내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입관세는 부과되지 않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Exemption)되는 것으로 간주함.

- 상호주의 원칙하에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외국국가대표 또는 공무원의 물품
-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할 국제기구 또는 공무원(근무자)의 물품
- 수출용으로(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 가공, 설치된 물품 또는 원재료
- 과학도서
- 종교의식, 자선, 사회, 문화적 목적으로 기증된 물품

- 박물관, 동물원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할 물품
- 학술 연구용에 사용할 물품
- 맹인 또는 기타 장애인을 위한 물품
- 국가 안보용 무기, 탄약과 군사용 장비 물품
- 국가 안보를 위한 물품생산에 사용될 물품 또는 원재료
- 견본물품(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
- 시체 또는 화장유골을 위한 관 또는 용기
- 이사화물
- 여행자, 운송수단의 승무원, 국경 통과자에 의하여 반입된 물품 그리고 일정하게 세관에서 정한 금액 및 수량범위 내의 탁송품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으로 간주함

- 산업기지의 설치 또는 개발을 위한 기계류
- 특정기간동안 산업기지의 설치 또는 개발을 위한 물품 또는 원재료
- 환경오염 방지용으로 사용될 장비 및 물품
- 농업사업, 동물사육, 어업의 설립 또는 개발을 위한 씨앗, 종축 (Breeding Animals)
- 허가 받은 선박에 의하여 포획된 수산물
- 수리, 가공 또는 시험용으로 수출된 물품
- 같은 국가에서 재수입된 물품
- 운송도중 또는 수입통관 대기중에 자연적으로 손상, 질적하락, 파괴, 부피(중량) 감소가 발생한 물품
- 인체 치료용 물품, 혈액과 시험용 피부조직
- 공공목적의 정부 조달물품
- 일시 반입물품

- 면세, 감면 그리고 환급에 대한 조항은 재무부장관에 의하여 규정화 됨. 인도네시아 관세법에 따라 면세, 감면 그리고 환급조항을 적용 받지 않

을 사람은 통보해야 함.(신청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 재정수입에 손실을 발생시킬 때마다 부과된 관세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행정 벌과금으로서 부과하게 됨.

- 1999년 3월 24일 관세국장의 “세관 통관절차에 관한 일반안내 발표이후” 수입절차를 개정하는 많은 변화가 계속되었음. 동 제도의 시행은 수입자를 세관직원과 함께하는 동참자로서 모든 세관공무원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식하게 되었음. 동 제도의 시행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입에 있어 세관과 시스템 제공자간 EDI제도라고 알려진 전자매체 방식의 활용
- 서비스 향상을 위해 非 현품검사 수단으로서 컨테이너용 X-RAY 활용
- 세관직원의 의무를 확정하는 수입화물 처리시간대 결정
 - 가) 수입신고서 제출로부터 검사여부 채널이 결정될 때까지 처리시간의 최대화
 - 나) 적색채널로 분류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입물품은 수입신고 접수 승낙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실제 현품검사의 실시
 - 다) 수입신고 접수로부터 48시간 이내 반출통지서의 발부
 - 라) 품목분류 접수번호가 발부된 30일 후에는 분류전문가는 품목분류 결정 통보

- 인도네시아 관세율 점진적 인하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내수시장에서의 가격왜곡을 해소하고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9,20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재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총 1만 1171개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조정검토를 마무리하고, 조정된 관세율을 2월부터 적용해 가기로 했다. 새로 개정되는 관세율은 2010년까지 5% 내외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

나감으로써 수입품들에 대해 국내시장을 개방해갈 예정이라고 함.

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은 기자들에게 지난 해 1,962건의 관세율 개정에 이어 12월까지 총 9,209개 품목에 대한 관세검토를 마쳤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개정 및 검토는 관세체제의 간소화를 위해 이뤄진 것으로 이를 통해 수입품의 내수가격의 왜곡을 막고 국내상품의 적절한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어떤 품목이 개정대상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언급이 없었으나 농산품, 의약품, 금속, 전자제품, 섬유 및 공예품 등을 포함한 19개 품목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장관은 이러한 새로운 관세체계가 국가 수익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세계무역협정에 순응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중요성에 비중을 두어 이런 결정을 했음을 강조했다.

Eddy Abdurrachman 재무부 관세담당 국장에 따르면 대부분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가 되겠지만, 보호가 요청되는 특정 가공품에 대한 관세는 2010년까지 최종적으로 인하되기 전에 오히려 인상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함.(실제로 금년에 개정된 800개 품목 중 165여개 품목은 오히려 관세가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음.)

면세로 조정되는 대부분의 아이템은 원자재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밀수업체들의 상대적인 마진율이 대폭 축소될 것임을 지적했다.

이번 관세율 조정에 대해 인도네시아 재계는 적극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그동안 수입 원자재가 비싸서 직접 제조보다는 완제품을 수입해 포장만 바꾸어 재판매해 온 것을 풍자했던 ‘Packagers’라는 오명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

그동안 업계에서는 가공품보다 원자재에 대한 관세율이 높은 현실을 ‘반산업화’라고 비난해 왔었음.

III. 수입검사제도 : 부류별 또는 품목별

1 - 1. 수입허가사항

- 인도네시아는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1982년부터 화학품, 중장비, 소비재 등 상품군 리스트를 설정하여 수입허가 요건을 부과하였음.
- 수입허가증을 소유하지 않는 기업은 무역부에서 승인한 수입업자를 통해서만 수입허가 품목을 수입할 수 있으며 특정품목에 대해 외국인은 인도네시아 수입업자를 통해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 인도네시아는 1980년대 후반부터 종이류, 유리, 식물, 철강제품, 플라스틱 등 많은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429개 품목의 수입을 규제하여 왔으며 1996년 이후 이를 189개 항목으로 축소함.
- 1996년 개방조치의 요약 내용
 - 한정수입자 개방 항목
 - 78개 한정수입자 항목(탄소 고함유 철판)
 - 1개 등록수입자 항목(1회용 가스라이터)
 - 2개 조달청 항목(항마푸대의 신제품)
 - 189개 불변 항목
 - 소금, 알콜함유 음료, 자동차, 쌀, 밀가루, 윤활유, 폭발성 재료, 중고 플라스틱, 살충제 등
- 189개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 제도는 인니 정부가 특정품목에 대해 인위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의 하나임.

○ 수입허가는

- 등록된 수입업자 취급품목(33개) : 주류 및 음료수류 27개, 공구류 6개
 - 생산하는 수입업자 취급품목(71개): 인조설탕류 3개, 프로필렌류 2개, 엔진 및 펌프류 5개, 트랙터류 3개, 전자키보드류 1개, 절단금속류 57개
 - 승인수입업자, 대리점 취급품목(47개) : 오토바이류 47개
 - 국영석유회사 PERTAMINA 취급품목(3개) : 윤활유3개
 - PT. Multi Nitrotama Kimia 취급품목(4개) : 화약류4개
- 인도네시아측은 WTO에 국영무역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10년에 걸쳐 폐지하기로 약속함.(2010년까지)

1 - 2. 식품수입허가 사항

- 인도네시아는 농산물의 경우 과일은 일반 수입업자들에게 수입이 허용되나 식품의 경우에는 수입 전에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소주 및 탁주의 경우에는 지정 수입업자에 의해서만 수입이 허용되고 있음.

○ 수출입 관련 주요 규정 및 내용

- THE DECREE OF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NO.230/MPP/KEP/7/1997
상기규정은 주로 수입절차에 관한 것으로 지정수입업자에 의해서만 수입되는 품목들을 명시하고 있음
- 종류로는 우유,치즈,알코올음료,맥주,와인,사이다,페리주,사케,꿀물,껌,보드카 등
- 수입식품은 우리나라의 식약청에 해당하는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BPOM)에 제품을 등록해야 하고 일부제품은 추가 승인을 필요로 하기도 함.

2. 식품수입검역·검사절차 및 제도

□ 검역제도

- 대부분의 수입 농산물이 도착하는 판중 프리옥 항구에 농림부 산하의 검역소가 있음.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전에 검역소에 통관서류 및 검역증사본을 제출 후 검역을 신청함. 검역소는 서류검토 후에 수입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이 기술된 통지서를 줌. 컨테이너가 항구에 도착하면 세관직원과 검역직원이 컨테이너를 검사 후 샘플을 검역소로 가져가서 검사를 실시함. 그러나 대부분이 한국 검역당국에서 보내온 서류만으로 검사를 대신하며, 이 서류를 검토 후 인도네시아 농림부에서 발행한 검사인증서를 주는 것으로 모든 검역절차를 대신 함. 소요금액은 약 30달러 정도이고 수속기간은 대부분 1일 정도가 소요됨.

□ 인도네시아 검역체계

○ 집행법령

■ 기본구성

- 제정년도 : 1992년(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o.16 OF 1992 CONCERNING ANIMAL, FISH, AND PLANT QUARANTINE)

■ 주요내용

용어의 정의

- 식물(PLANT) : 전염인자가 존재할 수 있는 식물의 형태 또는 일부 분(가공전, 후이거나 살아있거나 죽었어도 식물로 간주)
- 해충(PEST) : 모든 생물체에게 죽음을 유발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매개체

■ 동,식물의 검역에 관한 규칙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함.

- 검역요구조건

- 검역 조치
- 검역 범위
- 보균자, 질병, 해충의 종류
- 수출입 장소

■ 검역요구조건

: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동,식물의 질병과 유해 병균에 대한 검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요구됨.

- 수출국가의 검역증명서
- 지정된 장소로만 통관이 가능
- 검역 활동을 위해 통관 지역 관할 검역사무소에 신고 및 서류제출

■ 검역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할 사항

- 수입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 수입식물의 수량과 종류
- 방사선처리 및 유전자변형 여부
- 수출품의국가 및 지방명
- 수확 시점
- 수하인의 성명 및 이름
- 하역장소 및 수입목적

■ 검역에 따른 법률집행

- 서류와 위생 검사
- 구류,유치
- 치료(처치)
- 격리와 관찰
- 입국거부
- 수입허용

■ 조사에 관한사항

- 동, 식물 검역을 담당하는 검역관은 조사 시에 사법권이 주어져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권한이 주어진다.
- 가) 검역 위반 사항에 대한 서류 검증
- 나) 검역 사항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및 증인에 대한 소환요구

- 다) 검역 사항을 위반한 물품에 대한압류
- 라) 검역 사항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에게 증거 및 소명자료 제출요구
- 마) 공식 보고서 작성 및 결제

■ 위반시 조치사항

식품 검역법에서 기술된 각종 조항들을 고의적으로 위반할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1억 5천만 루피(약 15,000 USD)의 벌금에 처해짐.

■ 주요 품목에 대한 검역시의 수입허가 요건

- 과일 : 보건증명서 및 과실판리와 접촉이 없었다는 증명서 첨부(선한 과일은 수입전에 37°F에서 17일 이내 기간 동안 저장된 것이어야 함)
- 감자 : 보건증명서 및 흑병에 걸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첨부
- 특정동물 : 인도네시아 수의 부의 검사 증명서 첨부
- 가축 : 수출국의 가축보건관련 규칙을 참조하여 해당규칙을 제정하고 인 도네시아 도착후 10 ~ 14일 이내 검역실시(소는 도살용과 번식용으로 나누어서 수입허가)
- 마늘, 완두콩, 식물의 구근, 옥수수, 세이고우, 야자줄기 및 타피오카 뿌리에서 추출한 전분가루, 기름추출용 씨앗, 식품성 기름, 지방산, 타피오카, 비료 및 사료용의 기름찌꺼기, 가공되지 않은 담배, 소금, 생고무 및 가공고무, 조리된 과일 및 야채, 과일쥬스, 커피 및 차, 조리된 고기 및 생선, 비알콜음료 : 농업부나 무역부의 수입허가 필요
- 비료, 살충제 및 살균제 : 농업부나 관계기관의 실제 사용검사를 거쳐야 함.

3. 검역·검사 관련기관

○ 기관명 : AAQ(The Agency for Agriculture Quarantine)

농림부 산하 기관으로써 2001년(2001년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58호)에 의해 설립되었음. 현재는 인도네시아 전역의 200여개가 넘는 출입

소에서 검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587명의 인원이 68종이상의 동물과 수산물 및 식물 검역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검역비용

Type of Government non-tax Revenue - Plant Quarantine Service			Unit	Fees (IDR)
Inspection	Life Plant and seeds	Fruits	Per kg	450
	Plant Products (non-seeds)	Fresh Fruits	Per kg	10
	Processed/Unprocessed Plant Product	Bark, Leaves, Dried Flowers, Fruits	Per kg	5
Isolation and Observation	Life Plant and Seeds	Vegetable, Fruits	Per kg	(50,000) 100
Treatment	Physical	Cold	Per cubic M	-
		Heat Vapour	Per cubic M	-
		Water Soaked	Per kg	1,000
			Per Piece	(-) 100
		Irradiation	Per cubic M	(100) -
	Chemical	Fumigation	Per cubic M	7,500
		Spraying	Per cubic M	1,000
		Water Immersed	Per piece	500
			Per kg	1,000
		Powdered	Per kg	5,000
	Mechanical	Washing	Per kg	250
			Per cubic M	500
Qrnt Treatment Inspection	Per Serv/Pers			10,000
Laboratory Test Incl. Biotechnology	Per sample			10,000 ~ 100,000
Documentation of Quarantine Action	Per Pc of Form			5,000
Quarantine Facilities Utilization	Glass/Screened House	Per cubic M per day		50
	Warehouse	Per cubic M per day		25
	Incinerator	Per cubic M		10,000
	Quarantine Plot	Per square M per day		25

4.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정 및 검역현황

-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특별한 검역규정은 없음.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한국산 농산물이 검역상의 하자로 수입이 거부된 적이 없으며 인도네시아 검역당국에서도 중국 등의 일부 후발 수출국 농산물에 대해서만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산 과일 등의 일반농산물의 경우 아국의 검역기관에서 발행한 검역 증명서로 통관이 가능함. 간혹 추석을 전후하여 사과나 배등의 과일을 수입할 시에 샘플로 밤 등의 기타 농산물을 소량으로 수입할 적에 세관원이 이에대한 검역서류를 요구하며 뇌물을 요구하기도 함. 식물은 모든 검역서류를 완벽하게 준비만 한다면 따로 인도네시아에서 검역을 받을 필요가 없음.

IV. 식품위생제도

1. 식품표시제도(Labeling)

- 1996년에 공포된 식품법과 1999년에 공포된 소비자 보호법에 의하여 식품 라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식품라벨에 관한 규칙들을 근간으로 하였음.
 - Minister for Health Regulation No. 79 of 1978 concerning Food Labels and Advertisements
 - Minister for Health Regulation No. 76 of 1975 concerning Distribution and Labeling of Sweetened Condensed Milk
 - Joint Decree by Minister for Health and Minister for Religion No. 68 of 1985 concerning the Inscription “Halal” on Food Labels
 - Minister for Health Regulation No. 280 of 1976 concerning Distribution and Labeling of Foodstuff Containing Material Originating from Swine
 - Minister for Health Regulation No. 826 of 1987 concerning Irradiated Foodstuff
 - Director General for Control of Food and Medicine No.02240/B/SK/VII/1991
- 모든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포장에는 반드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표기규칙을 따라야 함.
 - 인도네시아 언어로 표기
 - 로마문자 사용
 -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
 - 표기는 일반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야 함.

○ 1996년 식품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식품의 이름
- 첨가 성분 항목
- 순 중량 및 크기 : 미터법 사용
- 제조업체 및 수입자의 이름과 주소
- HALAL(이슬람 식품기준)접촉 여부
- 유통기한

○ 한국산 식품 라벨 例(삼양사 수타라면 라벨)

SUTAH RAMEN(MI INSTAN RASA PEDAS)

KOMPOSISI :

MI : TEPUNG TERIGU, MINYAK PALM, TEPUNG KENTANG, GARAM, POTASIMUM KARBONAT.

BUMBU I : GARAM, PENGUAT RASA SODIUM GLUTAMAT, SAYURAN, GULA, BAWANG PUTIH, BAWANG MERAH, BUBUK DAGING.

BUMBU II : BAWANG MERAH, WORTEL, JAMUR, LADA

BUMBU III : LADA MERAH

CARA MASAK :

- 1. MASUKKAN MI, BUMBU KEDALAM 550CC AIR PANAS DAN MASAK SELAMA 4(EMPAT) MENIT.**
- 2. UNTUK LEBIH LEZAT DAPAT DITAMBAHKAN SAYURAN SEGAR.**

DIPRODUKSI OLEH : SAMYANG FOODS CO.,L TD

SEOUL, KOREA

BERAT BERSIH : 120g

BAIK DIGUNAKAN SEBELUM :

KODE PRODUKSI :

IMPORTIR : PT. KOIN BUMI

JAKARTA, INDONESIA

ML :

2. 수입식품의 성분

- 한국산 가공식품을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에 수입업자가 해당식품의 제조자로부터 입수한 7가지의 서류와 소정의 양식 및 샘플을 제출 후 약 1개월에서 6개월의 검사 기간을 거쳐서 모든 조건에 부합하고 이상이 없을 시에 수입허가가 떨어지며 이때 등록증 및 ML(MAKANAN LUAR NEGRI)번호를 부여 받음.

3. 식품첨가물 : 첨가가능 및 첨가금지 목록

- 시행법령 : (REGULATION NO:722/MENKES/PER/IX/88 ON FOOD ADDITIVES)에 의거하여 허가된 첨가물에 대한 설명 및 규칙서술

- 첨가가능품목

- Antioxidant - 산화방지제
- Anticaking agent - 항 고착제
- Acidity regulator - 산도조절제
- Artificial sweetener - 인공감미료
- Flour treatment agent - 소맥분 개량제

- Emulsifier stabilizer, thickener - 유화제, 안정제, 점증제
- Preservative - 방부제
- Firming agent - 고화제
- Color - 착색제
- Flavor, Flavor enhancer - 향미료
- Sequestrant - 교환수지

- 첨가금지 목록

첨가금지 착색제: 보건부 장관령(Permenkes 239/ Menkes/ Per/ IX/ 85 referred to in Streetfood 1992)

No.	Name	Number (C.I. No.)	No.	Name	Number (C.I. No.)
1.	Auramine	41000	16.	Oil Orange SS	12100
2.	Alkanet	75520	17.	Oil Orange XO	12140
3.	Butter Yellow	11020	18.	Oil Yellow AB	11380
4.	Black 7984	27755	19.	Oil Yellow OB	11390
5.	Burn Umber	77491	20.	Orange G	16230
6.	Chrysoidine	11270	21.	Orange GGN	15980
7.	Chrysoine S	14270	22.	Orange RN	15970
8.	Citrus Red No. 2	12156	23.	Orchil dan Orcein	-
9.	Chocolate Brown FB	-	24.	Ponceau 3R	16155
10.	Fast Red E	16045	25.	Ponceau SX	14700
11.	Fast Yellow AB	13015	26.	Ponceau 6R	16290
12.	Guinea Green B	42085	27.	Rhodamin B	45170
13.	Indanthrene Blue RS	69800	28.	Sudan I	12055
14.	Magenta	42510	29.	Scarlet GN	14815
15.	Methanil Yellow	13065	30.	Violet 6B	42640

4. 식품검사제도

시행법령

- 모든 수입식품은 보건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식품은 등록에 제외됨.
 - 상온에서 유통기한이 7일 이하인 가공식품
 - 재난시 사회단체나 각 정부에서 구호품으로 제공되는 가공식품
 - 개인이 소비할 소량이나 연구용 및 보건부 등록을 위하여 샘플로 가져오는 가공식품

- 식품등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식품제조자가 준비하는 서류
 - 1) CERTIFICATE OF FREE SALES
 - 2) LETTER OF APPOINTMENT
 - 3) INGREDIENT LIST
 - 4) CERTIFICATE OF ANALYSIS
 - 5) ANALYSIS CERTIFICATE
 - 6) MANUFACTURING PROCESS
 - 7) STABILITY TREATMENT

- 그 밖의 준비물
 - 1) 샘플은 종류에 따라서 다름
 - 음료수 : 1리터 이상
 - 라면 및 스낵 : 최소 10개 이상
 - 2) 식품 포장지
 - 3) 등록신청서류(신청금액 : 50,000루피아)

5. 잔류농약허용기준

- 잔류농약 및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1996년 제정된 식품법과 함께 농림부, 보건부에서 제정된 각종 시행령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음. 또한 미생물 및 중금속에 관한 규정들이 보건부 법규에 명시되어 있음.

□ 잔류농약에 관한 규정.

- 사람이 직, 간접적으로 소비할 식품에 허용되는 최대농약잔류량 항목에 관한 규정(Ref: Keputusan Bersama Menteri Kesehatan dan Menteri Pertanian Nomor : 881/Menkes/SKB/VIII/1996, 711/Kpts/TP270/8/96).
-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은 현지생산이거나 수입산이라 할지라도 규정된 항목의 허용치를 초과할 시에는 유통될 수 없음.
- 잔류농약 허용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은 수입될 수 없음.
- 농림부 및 보건부에서 지정한 실험실에서만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 있음.
- 농림부와 복지부는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책임에 따라 수입식품에 관한 감시와 통제를 수행함.
- 잔류농약에 관한 법령에는 218개 농약에 대한 잔류 기준들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예가 있음.

변 호	농약명	상 품 명		최대허용치 (mg/kg)
		인도네시아어	영 어	
1	Abamektin	Daging	Meat	0.01
	(abamectin)	Susu	Milk	0.01
2	Aldikarb	Bawang Bombay	Onion	0.05
	(aldicarb)	Biji-biji	Cereals(dry)	0.1
		Bit gula	Sugar beet	0.05
		Bit gula(daun)	Sugar beet(leaf)	1
		Buncis(kering)	Beans(dry)	0.1
		Daging	Meat	0.01
		Jagung	Maize	0.05
		Jagung(pakan ternak)	Maize(forage)	5
		Jeruk	Citrus	0.2
		Kacang kedelai(kering)	Soybean(dry)	0.02
		Kacang tanah	Peanut	0.05
		Kapas(biji)	Cotton(seeds)	0.1
		Kemiri	Pecan	0.5
		Kentang	Potato	0.5
		Kopi(biji)	Coffee(beans)	0.1
		Nanas	Pineapple	0.5
		Pisang	Banana	0.5
		Sorgum	Sorghum	0.2
		Susu	Milk	0.01
		Tomat	Tomato	0.5
		Ubi jalar	Sweet potato	0.1
3	Aldrin	Asparagus	Asparagus	0.1

□ 중금속 및 미생물

- 보건부 산하 식약청 령(No. 03725/B/SK/VII/89)에 잔류 중금속 허용치에 관한 규정이 있음. 이 규정은 6가지의 중금속(비소, 납, 구리, 아연, 주석, 수은)을 함유 가능한 15개의 식품별로 허용규정을 두고 있음.
- 이와 유사하게 보건부 산하 식약청 령(No. 03726/B/SK/VII/89)에 각각 16개 식품군 별로 지정된 미생물의 허용치가 있음.

6. 유전자 변형식품 현황

- 유전자 변형으로 생산한 농산물은 유통 전에 사람에게 안전한지를 확실하게 하여야 함. 또한 유전자변형식품(GMO's)을 사용한 상품에는 반드시 식품라벨에 “GENETICALLY ENGINEERED FOOD”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규정만 존재할 뿐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행정력 또한 미치지 못함.

7. 기타 식품위생 관련제도

□ HALAL 인증

-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이슬람 국가에서 HALAL 인증은 매우 중요함. 식탁도 코란이 지배하기 때문에 매우 엄격히 관리하며 국내산 식품에는 반드시 표기가 되었음. 수입식품에는 표기에 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HALAL 인증표시가 없으면 구입하지 않음. 그러므로 대부분의 수입식품들이 원산지에서부터 이 마크를 인쇄하여 수출하고 있음.

○ 2001년 1월 인도네시아에선 일본 아지노모토사가 판매하는 조미료 ‘아지노모토 베 돼지 효모를 사용했다 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음.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은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과 이슬람법에서 금하는 식품이며, 이슬람 세계엔 이처럼 법으로 금하는 하람(haram)식품과 허용하는 할랄(halal)식품이 있음.

○ 한국산 라면의 경우에도 일부제품이 스프에 돼지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지인들에게 판매할 시에는 직접 설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피해가고 있으나 판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HALAL 인증이 필수로 요구됨.

할랄식품	하람식품
1. 우유(소,낙타,산양의 젖) 2. 벌꿀 3. 생선 4.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물 5. 신선한 야채(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6. 땅콩,캐슈넛,헤이즐넛,호드 등의 견과류와 콩류 7. 신선한 과일, 말린과일(대추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8. 밀,쌀,호밀,보리,귀리등 곡물류 9.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등 동물 * 이러한 동물이라도 반드시 이슬람식 도살방법인 자비하(zabihah)에 따라야 함.	1. 돼지고기와 그 부산물 2. 피와 그 부산물 3. 육식동물 4. 파충류와 곤충류 5. 동물의 사체,도살전에 죽은 동물 6. 포도주,에틸알콜,화주 등의 술과 알콜성 음료 7. 그 밖의 할랄인지 하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의심스러운 식품 8.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할랄동물(자비하(zabihah)순수에 따르지 않은 고기)

- 밀가루 : 밀가루에 다른 원료를 배합할 때는 그 원료가 식물성이든 화학적으로 합성한 것이든 모두 할랄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됨.
- 우유 관련 제품 : 유청 젖당 카제인 무염버터 등 우유 관련 제품은 할랄 인증이 필요함. 탈지분유는 건조기가 비할랄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한 할랄 소재로 인정함.
- 에틸 알콜 : 에틸 알콜은 할랄 용매로 인정하지 않음. 대부분의 할랄 인증 기관에선 알콜이 원래 제품의 최초 단계에서 원료로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음. 그러나 자연히 생기는 소량의 알콜은 허용됨. 예를 들면 완전히 익은 과일이나 빵을 굽기 위해 가루 반죽을 효모로 발효시키는 것 등은 허용하고 있음.
- 식초 : 식초에선 증류 식초만 허용됨. 모든 알콜이 초산과 물로 변환하는 것이 니기 때문에 그 밖의 식초엔 희석 알콜이 소량 남아 있다고 보는 것임. 포도주와 방향성 식초는 할랄 식품(원료)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리얼 제품 : 비타민, 양아욱(마시멜로) 유래 젤라틴, 유제품 소재, 플레이버 및 착색료가 할랄 시장을 겨냥한 시리얼 제품을 개발할 때 사용 가능한 소재들임. 이들은 할랄 원료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면 안 됨.
- 유제품 : 유제품은 이슬람 세계에서 각종 가공식품에 사용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식품 소재 부문임.
- 강화 우유 : 비타민A와 D 는 할랄 원료에서 유래한 것이어야 함. 양털에서 얻은 비타민D (라놀린)는 할랄 인증을 받음. 비타민A는 탄산칼슘을 물에 반응 시켜서 제조하는데 이 비타민A가 식물성 지방 유래의 팔미틴산이 에스테르화한 것이라면 우유 강화용의 할랄 비타민A로 인정받음. 강화 우유에 유화제는 보통 폴리소르베이트60이나 80이 사용되며 그 원천은 식물성 지방이어야 함.
- 치즈 효소 : 대다수의 치즈 제조업자들은 최근엔 할랄 치즈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미생물 레닛(응유 효소)을 사용하고 있음.

새끼 염소나 송아지 새끼 양에게서 얻은 리파제는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한 것이 아니면 할랄로 인정받지 못함 다만 미생물 리파제만이 할랄로 인정받음. 효소를 사용하는 유제품 플레이버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이 원칙은 산유청(acid whey)과 당유청(suger whey) 젓당 그 밖의 유제품 소재나 유제품에도 적용됨.

- 스낵 : 감자 튀김, 프레첼, 팝콘 제품을 할랄 시장용으로 개발한 경우엔 유제품 소재와 효모 추출물, 플레이버, 착색료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케첩, 소스 : 마요네즈나 샐러드 드레싱, 케첩 및 소스가 할랄 식품으로 인정받자면 플레이버, 천연 조미료, 착색료, 식초, 유화제 등 소재가 할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샐러드 드레싱과 머스타드엔 포도주를 사용할 수 없음. 천연 조미료는 추출 용매로 아세톤을 사용해선 안 됨.
- 캔디와 초콜릿 바 : 캔디와 초콜릿에선 유화제, 젤라틴, 플레이버, 당밀, 착색료가 할랄이나 아니냐를 가르는 중요한 소재다. 곤충 분미물인 셀랙(shellac)은 할랄소재로 인정한다.
- 추잉껌 : 추잉껌이 할랄 시장에서 무슬림들에게 판매될 수 있으려면 껌 기재(gum base)와 연화제 젤라틴 플레이버 착색료와 같은 소재가 할랄로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 과일 주스 : 과일 주스는 플레이버와 착색료가 할랄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꼼꼼하게 조사해야 할 소재임.
- 영양바 또는 에너지바 : 영양바또는 에너지바는 할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주요한 소재가 비타민, 젤라틴, 플레이버, 착색료 등임.
- 발효 식물 제품 : 피클이나 김치와 같은 발효시킨 식물 제품은 발효 과정에 알콜이 생성되지 않고 플레이버와 같은 다른 첨가물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할랄 제품으로 인정받음.
- 육가공품 : 돼지고기는 할랄에서 가장 금지하는 식품임. 쇠고기, 닭

고기, 새끼 양고기, 칠면조 고기는 이들이 이슬람법에 따라 도살되었다면 먹을 수 있음. 할랄 식육에선 사료도 중요함. 사료는 무조건 식물로 만든 것이어야 함. 동물성 사료는 먹여선 안 됨. 성장 호르몬은 보통 돼지 유래 물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음. 도살 시 전기 쇼크법은 피해야 함. 대부분의 무슬림 소비자들은 손으로 도살하는 방법을 쓰고 있음. 또한 할랄 식사에선 동물의 피도 먹여선 안 됨.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고기는 피를 완전히 빼야 함.

V. 수입규제제도

-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적인 관세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의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일부 화학제품 및 철강제품을 비롯하여 타이어, 튜브, 가정용 전자기기, 일부 섬유류, 자동차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한 고율의 수입관세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또한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실효특혜관세(CEPT) 협정에 따라 아세안 국가에 대해서는 CEPT를 적용하고 있음. 관세인하 대상은 농업, 서비스를 제외하고 자본재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 가공 농산품, 기타 비 농산물 등이며 특혜 관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 국산자재 및 부품 사용비율이 40% 이상일 것이 요구됨.
- 2006년 5월에 한-아세안 FTA 상품협정이 체결되었고, 7월부터 발효가 되게 되면, 자유화 일정에 따라 점진적인 관세철폐 및 인하가 이루어질 전망이어서 한국의 대 인도네시아 수출도 크게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

1. 한국산 상품 수입규제현황

- 인도네시아는 일부 교역국에 대해 반덤핑 제소등 수입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실효를 거두기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아니고 일부 제조업체의 신청에 의해 정치·경제의 혼란한 시기에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수입규제 관계당국(반덤핑위원회 : KADI) 담당자에 따르면, 인도네시

아는 각국의 수입규제(주로 반덤핑) 추이에 따라 방어적 측면의 조치 내에서만 시행한다는 입장임.(실제로 인니의 경우 과거 반덤핑 관세를 활용하여 교역국가 일방이 먼저 제소를 할 경우 보복적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음.)

- 인니는 실제 한국이 인니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음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덤핑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의 인니산 인쇄용지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2004년 6월 이를 WTO에 제소하였음.
-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조정패널은 2005년 7월 15일 당사국에 배포한 최종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해 반덤핑 조치를 취한 한국 정부의 결정은 WTO 협정에 합치된다고 판정했음. 분쟁조정패널은 한국 무역위원회가 이용 가능한 자료를 사용해 인도네시아의 시나마르스그룹 3개사에 대해 단일 덤핑마진을 산정한 것은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지 않으며, 한국측이 산업피해 조사와 관련해 정보용지와 백상지를 동종 상품으로 판정한 것도 WTO 협정에 합치된다고 밝혔음.
- 인도네시아는 96년부터 2006년 8월 현재까지 15건의 한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가 있었다. 이중 Tin Plate, Carbon Black, 비코팅 인쇄용지 등 3건은 덤핑 판정이 났으며, 2건은 무혐의 판정, 6건은 기각, 4건은 절차가 진행중에 있음.

연 도	품 목	피제소국	진행상황
1996	Synthetic Fiber	한국, 대만	무혐의 판정
1999	Tin Plate	일본, 한국, 대만, 호주	덤핑 최종 판정 - 한국산 덤핑관세 4 ~ 6.5%
	Pipe Line	한국, 루마니아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2000	Welded Pipe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폴	제소자의 자격기준 미달로 기각
	Carbon Black	인도, 한국, 태국	인니재무부 덤핑최종 판정 (2004.9월) - 한국산 덤핑관세 7% ~ 10%
	Hot Rolled Plate	우크라이나, 일본, 한국, 중국, 인도, 루마니아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IWF/Wide Flange Beam/H Beam	인도, 사우디, 한국, 싱가폴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2001	헬로망간/실리콘망간	인도, 한국, 싱가포르	제소자가 제소 철회
	Steel Pipe	중국, 말련, 한국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2002	Phthalic Anhydride	일본, 한국, 인도	재무부 최종판정 대기중
2003	Un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한국, 핀란드, 인도, 말련	인니재무부 덤핑최종 판정 (2004.1월) - 한국산 덤핑관세 59.64%
	Coated Writing & Printing Paper	한국, 핀란드	덤핑무혐의 잠정결론 (2004.11)
	Polyester Staple Fiber(PSF)	대만, 한국, 태국	2004.8월 조사중단 결정후 번 복하고 재조사 개시
2005	Cast Glass & Rolled Glass	한국	조사개시
2006	Ceramic Tableware	한국	조사개시

자료원: Komite Anti Dumping Indonesia(KADI/인니 반덤핑위원회)

○ 반 덤핑 관세의 부과

■ 인도네시아는 한국, 핀란드, 말레이시아 및 인도산 비코팅 인쇄용지에 반덤핑관세를 2004년 11월부터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생산 및 수출자가 59.64%의 반덤핑관세를 4년간 부과 받았음.

■ 또한 인도네시아는 2004년 9월부터 5년간 한국, 인도, 태국 등 3개국의 카본블랙에 대해 반 덤핑관세를 부과했음. 관세율은 동양제철화학이 10%, Columbian Chemical Korea(CCK)가 7%, Korean Carbon Black(KCB)가 9%임.

2. 수입할당제도

○ 인도네시아는 일부 품목에 대해 정부기관이나 정부지정업체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수입량을 쿼터로 제한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특수 타이어

■ 황·적·녹색 크롬, 마분지

■ 직경 60mm 미만의 Piston Ring

■ 특정 섬유사, 카페트, 주트가방

■ 판유리

■ 페이트용 유제, 산포제, 용제, 현탄액

■ 쌀 도정용 기계, 장비, 부품

■ 단축 트랙터

○ 상기 수량제한 및 수입쿼터 대상품목은 우리나라의 대 인니 주요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이며, 일부 품목은 환경 및 국민건강 보호차원에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품목(냉장고, 소화기, 배터리, 트랙터, 섬유사 등)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진 경우가 많음.

3. 세이프가드제도

- 인도네시아의 safeguard규정은 2002년 12월 16일 제정되어 WTO에 통보되었으며, 본 규정에 의해 세이프가드위원회도 별도로 존재하고 있음. 인도네시아의 불공정무역에 관한 관련법규는 “관세법”, “동법 시행령”, 그리고 “세이프가드 조치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체계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WTO협정에서는 반덤핑조치협정과, 상계관세조치 협정을 분리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의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의 규정은 관세법에서 일반적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도 세부규정을 하고 있으나, WTO규정에서와 같이 자세한 내용을용을 규정하지 않아 그 해석을 하는데 있어 다분히 자의적 해석을 할 논란의 소지가 있다.

4. 수입제한사항

- 수입제한품목은 정부가 1982년 12월 식품 및 농산물에 대해서는 정부에 등록된 수입업자, 정부기관 이외에는 수입을 할 수 없게 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현재는 몇 개의 품목에 한해서 수입이 제한되고 있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는 연어, 고등어, 멸치, 기타 조제된 수산물일부, 게, 새우, 바다가재, 정제설탕, 백초코렛, 설탕이 가미된 알몬드이며 쌀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식량조달청(BULOG)에서 수입한다.

5. 수입금지품목 및 국가

- 인도네시아의 수입규제제도는 수입금지국, 수입금지품목, 수입제한품목으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금지 국가는 이스라엘이며 남아프리카 앙골라는 1994년 1월11일자로 해지되었음. 현재 수입금지 되고

있는 품목은 농산물의 경우는 없으며 인도네시아어로 된 잡지, 신문, 팜플렛, 중국어 표기된 신문 잡지, 팜플렛 등과 다음의 항목임.

■ 수입금지품목

- 에틸렌폴리, 스틸렌폴리머, 비닐 클로라이드폴리머
- 오존 파괴물질, 냉장고, 오토바이, 소화기 등

6.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정책

○ 현재 인도네시아의 반덤핑관세 규정은 “THE CUSTOMS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LAW NUMBER 10, 1995”의 제4장 18조 내지 20조에 규정되어있음. 그 규정에서 반덤핑관세는 다음의 경우에 수입된 때에 적용됨.

가) 수출 가격이 물품의 정상 가격보다 더 낮은 경우

나) 당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또는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을 위협하거나 동종물품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제18조)

여기서 “국내산업(domestic industry)”이란 일반적으로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업자, 또는 관련된물품의 대다수의 생산을 차지하는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를 말하며, 또한 “동종물품(similar goods)”이란 수입된 관련물품이 기술적,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등이 동종물품이거나 전적으로 같은 물품이거나 그 속성이 유사한 물품을 말함. 여기서 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동종물품의 거래가 없거나, 만약 국내시장에서 판매량이 매우 작아서 비교의 팩터를 사용할수 없게 된 때에는 정상가격으로 산정함 (EXPLANATORY THE CUSTOMS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10 OF 1995., 제19조).

○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이는

가) 반덤핑관세는 물품의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의 최대금액은 발동요건에서와 같이 수입된 물품에 부과됨. 나)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입관세의 징수와 더불어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과 함(제19조).

반덤핑관세의 부과 조건 그리고 실행절차의 규정은 정부 규정 보다 우선함(제20조).

여기서 “수출가격(export value)”이란 관세영역에 수출된 물품에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되어질 가격을 의미함. 그 수출가격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출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3자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수출가격은 수입물품이 자유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하며, 수입할 때의 조건과 다른 조건하에서 재판매되거나 주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적용한다. 또한 “정상가격(normal value)”이란수출국의 국내시장에서 소비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거래되어지는 실제로 지불되거나 지불되어질 유사한 물품의 가격을 의미한다(EXPLANATORY THE CUSTOMS LAW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NUMBER 10 OF 1995., 제18조).

7. 품질인증제도

- 인도네시아는 종전 국가표준규격제도로 인도네시아 공업표준(Standard Industry Indonesia : SII)과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tandard National Indonesia : SNI)을 병행 운영하였으나, 1994년 4월 SII를 폐지하고 SNI에 의해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표준제도는 국가표준위원회(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국산업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 대

부분 강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

8. 기타 비관세장벽 및 조치 : 통관절차, 원산지, 환경정책 등

- 인도네시아에는 365개 종류의 비관세장벽이 존재하여 아세안 국가중에서 가장 많은 비관세 장벽이 있음. 종류는 다음과 같음.

수입제한(1), 수입독점(13), 가산세 및 가산금(21), 소비세(7), 수입 금지(2), 수량규제 - 라이선스(111), 수량규제 - 금지(48), 수량규제 - 쿼터(25), 수량규제 - 선택적수입승인(2), 기술기준(5), 기술기준 - 라이선스(1), 기술기준 - 상품표시(40), 기술기준 - 분류/포장(12), 기술기준 - 선적 전 검사(2), 기술기준- 품질기준(38), 기술기준 - 기술규제(28), 기술기준 - 시험, 검사 및 검역(8)

- 인도네시아 정부는 점진적으로 비관세장벽을 제거해 나가고 있음. 그 대표적인 예로 과거에는 국가조달청(National Logistics Agency ; Bulog)이 밀, 쌀, 설탕, 대두 등 주요 농산물(식량) 수입을 독점했으나, 1998년 9월 이후 민간회사도 이들 상품의 수입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그 동안 금지해왔던 어선의 수입도 허용했음. 그러나 쌀과 설탕의 경우 종전의 종량 관세를 특별 관세로 변경시켜 관세율을 상향조정)하는 추가 보완장치를 마련해 자국시장을 보호하는 등 여전히 ASEAN 국가 중 가장 많은 비관세장벽을 보유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음. 그 배경에는 문화적 특성과 수입대체 정책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인도네시아어와 중국어로 제작된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 등의 오락문화 상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 닭고기가 Halal에 의해 조리된 것인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없다는 명분 하에 닭고기 가공 식품의 수입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실수요수입(IP), 특별재화수입면허(IT), 일반

수입면허(IU : 수입신고 대상) 등으로 수입면허의 유형을 나눠 알코올 음료, 윤활유 등 141개 관세라인에 대해 수입면허를 요구하고 있음. 게다가 2002년 3월부터 옥수수, 쌀, 대두, 설탕, 직물 및 의류, 신발, 전자제품 및 완구 등 111개 관세라인에 대해 특별수입허가 취득 의무화 규정(Special Importer Identification Code Numbers ; NPIK)을 적용하여 Identify Card를 취득한 업체만이 수입을 할 수 있도록 수입규제를 강화하였음.

- 직물의 경우도 법령에 따라 수입 원료를 통해 최종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만이 직물에 대한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인도네시아는 육류와 가금류의 수입에 대해 수입추천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수입추천서 승인시 정부가 임의로 신청 수량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의 수량제한을 가하고 있음. 소금 및 설탕 수입업자는 수입등록을 해야 하고, 50%는 국내에서 조달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와인과 증류주의 경우 170%의 관세와 10%의 부가가치세 및 35%의 사치세가 부과되어 사실상 수량제한을 받고 있으며, 2005년 현재 공기업 1개를 포함한 3개 회사에만 수입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
- 기술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기관 BSN이 제정한 국가표준시스템(SSN)상의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이 있음. 인도네시아는 현재 의무적 표준(Mandatory standards) 적용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2003년 2월 이래 통상산업부 표준 74개, 농수산부 113 등 187개의 의무적 표준이 마련되어 있음. 이외에도 선적 전 검사와 검역, 검사, 시험 등의 기술규제가 존재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1999년 이후 식품표시제도 시행하고 있음. 또한 2000년 7월 이후 모든 수입식품을 식약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식품 검사과정에서 상품 성분뿐만 아니라 영업기밀

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수수료가 최소 6~300달러에서 최대 120~1,200달러로 고액이며,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는 각국 정부의 지적으로 식약청에서 수정 법안을 마련, 추진 중에 있으나 인도네시아 특성상 언제 될지는 기약할 수 없음.

9. 한국식품 수입규제 및 위반사례 등

- 국가청렴도 순위 조사국 91개국 중 나이지리아, 아제르바이잔 우간다와 함께 88위를 기록한 인도네시아는 각종 부정부패가 말단 일선 공무원 부터 상부조직에 이르기 까지 그 뿌리와 범위가 너무도 깊음. 신정부 출범 이후 부패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사회전반의 개혁 및 부패방지 위원회 등을 두어 다방면에서 노력중이나 아직까지는 효과가 미미함. 도리어 뇌물의 액수가 더 올라가는 결과만 초래함.
- 다른 외국기업에 비해 한국기업들이 편법이 통용되는 문화에 익숙함을 인식해 한국식품의 통관에는 어떠한 문제든지 찾아내어 벌금을 물리려하고 이를 봐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임.
- 국내 S사의 라면인 경우 계속해서 수입이 되며 이미 수입허가인 ML을 취득하였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였는데도 세관원이 자의적으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어떤 근거로 산정되었는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저가격위반으로 세금을 청구함. 항상 500달러 정도의 뇌물을 요구하며 이나마도 자주 6개월에서 1년에 한번씩 담당이 바뀜.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관에 계속해서 식품이 정체되어 변질 및 유통기한의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요구를 들어 주어야 함.
-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식품을 수입하는 업자 중에서 정식으로 ML

을 취득하고 한국본사와 직거래를 하는 업체는 2~3개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소량 다품종으로 수입허가 없이 일종의 밀수로 수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실상 앞서도 기술했듯이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너무나 많고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라 그 많은 식품아이템 전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일 뿐만 아니라 서울의 본사에서조차 제조 비밀의 노출우려, 한국식약청의 인가 등 식품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선뜻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와 같은 이유와 아직 대량으로 수입하기에는 부족한 교민수와 판매량의 부족으로 대부분이 비정상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음.

- 비정상적인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신정부 출범이후 거의 두배가격으로 비용이 상승함. 현재 20피트에는 약 5000불 가량, 40피트에는 9000불 정도가 소요됨. 특히 이슬람 신년 명절인 10월경이 다가오면 세관원들의 부정부패가 절정에 달해 한국산 과일 및 추석을 겨냥한 상품들이 통관이 지연되거나 추가로 많은 비용이 소모되어 그 만큼 소비자에게 그 비용이 전가되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VI. 기타 사항

1. 농수산물(식품)관련 주요정부기관내역

Ministry of Finance

Director General for Customs and Duties

Jalan Jend. A. Yani / By Pass

Jakarta

Tel : +6221-4897511

Fax : +6221-4890308

Ministry of Agriculture

Director General for Food Crops

Jalan AUP Pasar Minggu, Kotak Pos 97

Jakarta 12520

Tel : +6221-7806810

Fax : +6221-7806309

Email : webmaster@deptan.go.id

Website : www.deptan.go.id

Director General for Livestock Services(DGLS)

Building C, 6th Floor

Jalan Harsono RM No. 3, Ragunan

Pasar Minggu

Jakarta 12550

Tel : +6221-7815580

Fax : +6221-7815581

Director General for Agricultural Processing and Marketing

Building D, 2nd Floor

Jalan Harsono R.M No. 3

Ragunan, Jakarta 12550

Tel : +6221-7816183

Fax : +62-21-7816184

Agency for Agricultural Quarantine

Building E, 5th Floor

Jalan Harsono R.M No. 3

Ragunan, Jakarta 12550

Tel : +6221-7816483

Fax : +6221-7816483

Email : caqsps@indo.net.id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Director General for Foreign Trade

Building I, 4th Floor

Jalan M.I. Ridwan Rais No. 5

Tel : +6221-3858204, 3860940 Fax : +6221-3858191

Email : djdaglu@dprin.go.id

Directorate of Import

Building II, 8th Floor

Jalan M.I. Ridwan Rais No. 5

Tel : +6221-3858194, 3858171/5 x. 1145

Fax : +6221-385-8194

Email: diri-daglu@dprin.go.id

Directorate General for Chemical Industry, Agros & Forest Products

Jalan Gatot Subroto No. 52-53, 18th Floor

Jakarta 12950

Tel : +6221-5252713

Fax : +6221-5252450

Email : djikahh@dprin.go.id

National Agency of Drugs & Food Control - BPOM

Deputy III for Dangerous Materials and Food Safety Control

Jl. Percetakan Negara No. 23

Jakarta 10560

Tel : +6221-4253857 Fax : +6221-4253857

Email :Informasi@pom.go.id

National Logistics Board - BULOG

Head

Jalan Gatot Subroto No. 49

Jakarta 12950

Tel : +6221-5252209 Fax : +6221-5204334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BSN

Chairman

Manggala Wanabakti Building, Block IV, 4th Floor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Tel : +6221-5747043 Ext. 104 Fax : +6221-5747045

The Indonesian Council of Ulama - MUI

Chairman

Masjid Istiqlal Taman Wijaya Kusuma

Jalan Masjid Istiqlal

Jakarta 10710

Tel : +6221-3841662 Fax : +6221-3847189

The Indonesian Food & Beverage Association - GAPMMI

Chairman

Duta Mas Fatmawati

Blok D-1 no. 30

Jl. RS Fatmawati Raya

Jakarta 12150

Tel : +6221-7230391, 7230091 Fax : +6221-7230090

Email : gapmmi@indosat.net.id

**Association of Indonesian Fresh Fruit and Vegetable Importers
(ASIBSINDO)**

Chairman

Komplek Material Mangga Dua Building

Jalan Mangga Dua Raya Blok F4/25

Jakarta 10730

Tel : +6221-3906973 Fax : +6221-39065674

Indonesian Consumer Organization - YLKI

Chairperson

Jalan Pancoran Barat VII No. 1

Duren Tiga, Pasar Minggu

Jakarta 12760

Tel : +6221-7981858 Fax : +6221-7981038

Email : konsumen@rad.net.id Homepage: www.ylki.org

Association of Flourmills - APTINDO

Chairperson

Daniprisma Building, 3rd Floor

Jl. Sultan Hasanuddin No. 47-48

Jakarta 12160

Ph : +6221-72797843 Fax : +6221-7206008

Email : aptindo@rad.net.id

Association of Meat Importers - ASPIDI

Chairman

Jl. Ciputat Raya No. 351

Kebayoran Lama

Jakarta 12240

Ph : +6221-72793417/72793409 Fax : +6221-72793419

Email : asp-1984@cbn.net.id

Association for Food and Beverage Importers AIMMI

Chairperson

PT Columbia Food

Jl. Kebon Bawang V No. 44

Yos Sudarso, Tanjung Priok

Jakarta 14320

Ph : +6221-43911526 Fax : +6221-4353384

Email : Colfood@cbn.net.id

Indonesian Cold Chain Association(ARPI)

Executive Director

Graha Iskandarsyah, 8th floor

Jl. Iskandarsyah Raya / 66C

Kebayoran

Jakarta 12160

Ph : +6221-72783707 Fax: +622-72783708

2. 인도네시아 수출시 유의사항

- 모든 바이어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첫 번째 문제점은 역시 가격임. 현재 미 국산 과일조차도 중국산에 자리를 점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라 가격이 가장 큰 애로사항임. 한국산과 경쟁 품목인 사과 배등이 이미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중국산이 유통되고 있음. 특히 소매시 발생하는 유통기한 초과, 부패 등의 위험요인을 공급자가 감당해야 하므로 가격이 낮은 중국산을 선호함.
- 대부분의 한국산 과일이 수확 후 수출이 가능한 시기인 10월경에는 이곳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에게 가장 저렴하면서도 당도가 좋고 친숙한 과일인 망고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와 겹치는 관계로 매장에서의 모든 수입과일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함. 물량도 풍부하거니와 가격도 1kg에 5000 ~ 10,000에 형성되어 외국인 및 모든 계층의 소비자들이 부담이 안되는 가격에 판매됨.
- 기후영향에 따라 품질이 일정치 못한 것도 문제점임. 2003년의 경우 태풍의 영향으로 한국산 배의 당도가 떨어져 적지 않은 이미지 손상을 가져 왔음. 2004년에 일부 구매 담당자들은 2003년을 기억하여 구매를 꺼리는 경우가 있었음. 이에 반해 중국산이나 기타 타국 산 과일은 항상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므로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음.
- 한국산 과일은 항상 출하시기가 항상 연말에 집중되는 것이 문제임. 물론이 시기가 이슬람의 최대명절과 구정이 해당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현지과일 및 모든 수입과일이 가장 풍성하게 출하되는 시기이므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음. 현지 유통

담당자에 의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시기는 3~5월 t이라고 전함. 이 시기에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하는 것도 고려할 만한 사항임.

- 매년 가격의 등락폭이 타국산에 비해 큰 것도 많은 애로사항임. 미국, 태국, 중국처럼 물량이 풍부하지 못하고 항상 국내 소비 물량의 추이에 따라 수출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매우 커서 수입상이 한국산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임.

-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가격을 통한 경쟁을 지양하고 품질로서 경쟁을 하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시장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공급시기와 구매계층, 매장유형별, 장소, 에이전트에 따른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첫째로는 구매계층에 따른 선별적 접근을 하여야 함. 특히 랜치마켓 같은 곳은 대부분이 현지 상류층이나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업체이며, 그들이 보유한 상류층 고객명단 만해도 3천명에 이르며, 이들은 언제든지 품질만 좋으면 가격에 관계없이 구매할 의사가 있음. 이런 곳에는 특상품을 고급포장으로 공급한다면 계절에 관계없이 가격에 관계없이 판매가 가능함.

또한 같은 유통체인 라도 장소에 따른 구매계층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도 인도네시아 시장이 지닌 특징 중의 하나임. 디아몬 체인의 경우 끌라빠가딩 지점이 매출 및 고객수는 많으나 부유층이 밀집한 파트마와티 지점이 적은규모에도 불구하고 수입과일이 판매율이 높으며 객단가도 높음. 이는 모든 유통체인이 마찬가지임.

한 매장에서 중국산의 경우 배를 예로 들면 kg에 7,000루피아의 아주 저렴한 Xiang Lie 품종과 두배 이상의 가격이 높은 신고배를 포함하여 보통 2~3가격대로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여주고 있음.

따라서 포장을 획기적으로 차별화하고 배, 사과로 편중된 수입상품을 다양화하여야 함. 또한 저장, 운송방법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함.

<자료 문의처>

- 태국, 멕시코 수입제도 문의처 (정보서비스본부 무역정보 1팀)
- 전화 : (02)6300-1391~1397 / 팩스 : (02)6300-1609
- 일본 수입제도 문의처(도쿄 aT센터)
- 전화 : 81-3-5367-6656 / 팩스 : 81-3-5367-6657
- 중국 수입제도 문의처(베이징 aT센터)
- 전화 : 86-10-6410-6120~1 / 팩스 : 86-10-6410-6122
- 미국, 캐나다 수입제도 문의처
- 전화 : 1-516-829-1633 / 팩스 : 1-516-829-6521
- 인도네시아 수입제도 문의처(싱가포르 aT센터)
- 전화 : 65-6324-1233, 0402~3 / 팩스 : 65-6324-0446
- EU 수입제도 문의처(로테르담 aT센터)
- 전화 : 31-10-415-1091 / 팩스 : 31-10-462-1271
- 러시아 수입제도 문의처(모스크바 aT센터)
- 전화 : 7-495-258-1397 / 팩스 : 7-495-258-1396
- 대만 수입제도 문의처(타이페이 aT센터)
- 전화 : 886-2-8786-6791 / 팩스 : 886-2-8786-6793

※ 본자료집에 실린 내용의 무단전제, 복사 또는 인터넷 게재 등을 금합니다.

본 자료집은 조사시점의 제도, 통계자료 및 현지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된 것임을 알려드리오며, 본 자료집의 발간이후 조사대상국의 상황변화 등에 따라 자료집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공사는 임직원에 대한 부정비리신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수신자부담 「24시간 부정비리신고 모바일 핫라인(080-112-2580)을 개설하였습니다. 신고내용은 비밀이 절대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